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5
----------	----

제출년월일 : 1995. 11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95. 4. 1)에 따라 구조례중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과태료 징수절차 등을 보완하여 자치구 업무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안 제18조 별표4)
- 나.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및 양식 등을 보완하여 과태료 처분의 효율성을 기함.(안 제18조)
- 다. '96. 7. 1일부터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안 제18조 별표4)
- 라. 분뇨관련영업 대행계약기준 일부변경(안 제10조 별표1)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환경부예규 제 126호(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규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해당없음
  - 라. 기 타 : 개정조례안(따로붙임)
-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제1항중 “야간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를 “야간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별도 차량 운행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8조제2항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동조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제10조제3항중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중 “과 재투입된 종오니의 양”을 삭제한다.

제16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징수)① 구청장은 법 제58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위반사실의 조사 또는 위반사실의 적발, 인지확인이 있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진술이 없거나 서면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과태료 납부통지서(고지서) 등을 첨부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납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④ 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⑤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채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부과취소후 담당공무원의 의견첨부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관할 법원에 통보한다.

⑦ 구청장은 납부기간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의 독촉장을 체납 확인 후 7일 이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수납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별표1). (별표4) 및 별지 제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분뇨관련 영업 대행계약의 기준(제10조 제2항 관련)

구분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	차량	차고	신고용전화	기타
분뇨수집 운반업	분뇨의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인력 2인 이상	· 법인 : 5천만원 · 개인 : 재산 평가액 1억원 이상	전용면적 15m <sup>2</sup> 이상	· 흡인식 차량 용량의 합계 3,600ℓ 이상 (탈취시설 부착)	·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최저 보유차고 (대 당) - 5톤미만 : 13m <sup>2</sup> - 5톤이상 10톤미만 : 26m <sup>2</sup> - 10톤이상 : 36m <sup>2</sup>	2대 이상	- 소독조 1조이상 - 종사원 목적시설
정화조 청소업	가. 수질환경기사, 위생사 또는 환경 기능사중 1인 이상 또는 고등학교졸업 이상자로서 당해 업종에 서 4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인이상 나. 정화조의 청소종사하는 인력 2인 이상	· 법인 : 5천만원 · 개인 : 재산 평가액 1억원 이상	전용면적 15m <sup>2</sup> 이상	· 흡인식 차량 용량의 합계 30,000ℓ 이상 (탈취시설 부착) · 오니처분용화물 차 1대이상	·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최저 보유차고 (대 당) - 5톤미만 : 13m <sup>2</sup> - 5톤이상 10톤미만 : 26m <sup>2</sup> - 10톤이상 : 36m <sup>2</sup>	2대 이상	- 소독조 1조이상 - 종사원 목적시설

[별표 4]

## 1.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 관련)

위 반 내 용	부과금액(단위 : 만원)			
	1 차	2 차	3 차	4 차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자				
가. 오수정화시설 B.O.D(mg/ℓ) (1) 1일 처리용량 100m <sup>3</sup> 미만 : 100초과 (2) 1일 처리용량 100~200m <sup>3</sup> 미만 : 80초과 (3) 1일 처리용량 200m <sup>3</sup> 이상 : 60초과  단, '96. 7. 1일부터 아래의 2개항목 기준적용 - B.O.D S.S(mg/ℓ) (1) 1일 처리용량 100m <sup>3</sup> 미만 : 80초과 (2) 1일 처리용량 100~200m <sup>3</sup> 미만 : 60초과 (3) 1일 처리용량 200m <sup>3</sup> 이상 : 40초과	10 20 50	20 50 100	50 100 100	100 100 100
나. 정화조 B.O.D 제거율(%) (1) 처리대상인원 2,000인 미만 : 50% 미만 (2) 처리대상인원 2,000인 이상 : 50% 미만	10 20	20 50	50 100	100 100
2. 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한 자로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자 - B.O.D 1,500mg/ℓ 초과 단, '96. 7. 1일부터 2개항목기준적용 - B.O.D S.S 500mg/ℓ 초과	20 20	50 50	100 100	100 100

위 반 내 용	부과금액(단위 : 만원)			
	1 차	2 차	3 차	4 차
3. 법 제9조 제2항 또는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가. 오수정화시설의 미신고자 (1) 1일 처리용량 200㎡ 미만 (2) 1일 처리용량 200㎡ 이상	20 30	40 60	60 100	100 100
나. 정화조의 미신고자 (1) 처리대상인원 2,000인 미만 (2) 처리대상인원 2,000인 이상	10 20	20 40	30 60	50 100
4. 법 제11조, 제26조 또는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오수정화시설·정화조·축산폐수정화시설 또는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사용한 자				
가. 오수정화시설의 사용 (1) 1일 처리용량 200㎡ 미만 (2) 1일 처리용량 200㎡ 이상	10 20	20 40	30 60	50 100
나. 정화조의 사용 (1) 처리대상인원 2,000인 미만 (2) 처리대상인원 2,000인 이상	5 10	10 20	20 30	30 50

위 반 내 용	부과금액 (단위 : 만원)			
	1 차	2 차	3 차	4 차
다.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사용 (1) 축산폐수 배출시설설치 신고자 (2) 축산폐수 배출시설설치 허가자 (가) 준공검사를 받기전에 사용한 경우 (나) 준공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계속 사용한 경우	20 50 100	40 50 100	60 50 100	100 50 100
라. 간이 축산폐수정화조의 사용	10	20	30	50
5. 법 제13조 제1항 및 제3항, 제22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오수정화시설·정화조·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당해시설의 설계·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사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말긴자.				
가. 오수정화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1) 1일 처리용량 200m <sup>3</sup> 미만 (2) 1일 처리용량 200m <sup>3</sup> 이상	20 30	40 60	60 100	100 100
나. 정화조의 설치 또는 변경 (1) 처리대상인원 2,000인 미만 (2) 처리대상인원 2,000인 이상	10 20	20 40	30 60	50 100
다.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50	100	100	100

위 반 내 용	부과금액(단위 : 만원)			
	1 차	2 차	3 차	4 차
라. 축산폐수 정화시설의설치 또는 변경 (1) 축산폐수 배출시설설치 신고자 (2) 축산폐수 배출시설설치 허가자	50 100	70 100	80 100	100 100
6. 법 제14조 제2항, 제28항 제3항 또는 제3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오수정화시설·정화조·축산폐수정화시설 또는 간이 축산폐수정화조를 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 관리한 자				
가. 기능의 정상적 유지 여부를 점검하지 아니한 자 (1) 오수정화시설 (가) 1일 처리용량 200㎡ 미만 (나) 1일 처리용량 200㎡ 이상	10 20	20 40	30 60	50 100
(2) 정화조 (가) 처리대상인원 2,000인 미만 (나) 처리대상인원 2,000인 이상	5 10	10 20	20 30	30 50
(3) 축산폐수 정화시설 (가) 축산폐수 배출시설설치 신고자 (나) 축산폐수 배출시설설치 허가자	20 30	40 50	60 100	100 100
(4) 간이 축산폐수 정화조	10	20	30	50
나. 방류수 수질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1) 1일 처리용량 200㎡이상인 오수정화시설(6월마다 1회 이상)				

위 반 내 용	부과금액(단위 : 만원)			
	1 차	2 차	3 차	4 차
(가) 최근 1년간 1회 측정 (나) 최근 1년간 미측정	10	20	30	50
(2) 처리대상인원 2,000인 이상 정화조(6월마다 1회 이상) (가) 최근 1년간 1회 측정 (나) 최근 1년간 미측정	5 10	10 20	20 30	30 50
(3) 축산폐수 배출시설설치 신고자(6월마다 1회 이상) (가) 최근 1년간 1회 측정 (나) 최근 1년간 미측정	10 20	20 40	30 60	50 100
(4) 축산폐수 배출시설설치 허가자(분기 1회 이상) (가) 최근 1년간 1~3회 측정 (나) 최근 1년간 미측정	20 30	40 50	60 100	100 100
다.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한 자 (1) 오수정화시설(년 1회 이상) (가) 1일 처리용량 200m <sup>3</sup> 미만 (나) 1일 처리용량 200m <sup>3</sup> 이상	5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 정화조(년 1회 이상) (가) 처리대상인원 2,000인 미만 (나) 처리대상인원 2,000인 이상	20 50	50 100	100 100	100 100



위 반 내 용	부과금액(단위 : 만원)			
	1 차	2 차	3 차	4 차
(3) 축산폐수 정화시설(년 1회 이상) (가) 축산폐수 배출시설설치 신고자 (나) 축산폐수 배출시설설치 허가자	5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4) 간이 축산폐수 정화조(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수시 내부청소)	20	40	60	100
라. 1일 처리용량 100m <sup>3</sup> 이상인 오수정화시설 또는 처리 대상인원 500인 이상 정화조의 배출 방류수를 소독하지 아니한 자	10	20	30	50
마. 악취 발생 또는 해충 번식을 방지하지 아니한 자 (1) 오수정화시설 (가) 1일 처리용량 200m <sup>3</sup> 미만 (나) 1일 처리용량 200m <sup>3</sup> 이상	10 20	20 40	30 60	50 100
(2) 정화조 (가) 처리대상인원 2,000인 미만 (나) 처리대상인원 2,000인 이상	5 10	10 20	20 30	30 50
(3) 축산폐수 정화시설 (가) 축산폐수 배출시설설치 신고자 (나) 축산폐수 배출시설설치 허가자	20 30	40 50	60 100	100 100
(4) 간이 축산폐수 정화조	10	20	30	50

위 반 내 용	부과금액(단위 : 만원)			
	1 차	2 차	3 차	4 차
바. 축산폐수 배출시설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 관리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50	100	100	100
7.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간이오수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50	70	100	100
8.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공산품의 판매 또는 사용금지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20	30	40	100
9. 법 제24조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 자 (1) 축산폐수 배출시설설치 신고자 (2) 축산폐수 배출시설설치 허가자	30 50	50 70	70 100	100 100
10. 법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구역 기타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자 (1) 분뇨 수집·운반업자 (2) 정화조 청소업자	30 50	60 100	100 100	100 100
11. 법 제35조 제6항 및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요금을 징수한 자	20	50	100	100
12. 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0	50	100	100

위 반 내 용	부과금액(단위 : 만원)			
	1 차	2 차	3 차	4 차
13.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0	50	100	100
14. 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0	50	100	100
15. 법 제43조 규정에 위반하여 기술관리인 등의 교육을 받게하지 아니한 자 (1) 기술 관리인 (2) 분뇨처리 담당자 등	20 50	40 70	60 100	100 100
16. 법 제44조 규정에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	10	30	50	100
17. 법 제45조 규정에 위반하여 휴업·폐업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0	50	100	100
18.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0	50	100	100
19. 법 제25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의 승계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0	30	50	-

## 2. 과태료 부과 일반 기준(법 제58조 관련)

1. 위반 행위가 2이상 일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의 상향부과 기준은 위반사례 이전 최근 1년간을 기준으로 한다.
2. 동일한 사항에 관련되어 중복되는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그중 다액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3. 제1호에서 제19호까지의 개별기준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는 유사한 위반행위에 준하여 금액을 부과한다.
4. 제1호에서 제19호까지 규정된 과태료 금액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지 제2호 서식]

## 분뇨 자가수집 운반업 신고필증

신	상호(명 칭)		
칭	성명(대표자)		
인	주 소		
영업의소재지			
영업의종류			
사무실면적		전화번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 수집 운반업 신고필증을 교부 합니다.

199    년    월    일

영 등 포 구 청 장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수 신 :

제 목 : 과태료 처분 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 조  
제 항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  
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에 납  
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 부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영 등 포 구 청 장

인







[별지 제7호 서식]

제 호

수 신 :

발 신 : 영등포구청장

인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통보

1.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 조와 관련입니다.
2.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어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의거 통보합니다.

과 태 료 처분에대한 이의제기자	① 성 명 (한자)	② 주민등록 번 호
	③ 주소	
과 태 료 처분내역	④ 고지일자	⑤ 과 태 료 금 액
	⑥ 부과기간	⑦ 이의제기 일 자

첨 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및 이의신청 사본 1부.

2. 담당공무원 의견서 1부. 끝.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정화시설의 야간청소)</p> <p>① 구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도로교통규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이하 “경찰청고시지역”이라 한다)안의 정화시설에 대하여 <u>야간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u></p> <p>② ~ ③ (생략)</p>	<p>제5조(정화시설의 야간청소)</p> <p>① ----- ----- ----- ----- <u>야간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별도 차량운행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8조(분뇨의 자가수집 운반신고)</p> <p>① (생략)</p> <p>② (생략)</p> <p>(신설)</p> <p>1. (생략)</p> <p>2. (생략)</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p> <p>2. (현행 제1호와 같음)</p> <p>3. (현행 제2호와 같음)</p>			
<p>제10조(분뇨수집 · 운반 등의 대행)</p> <p>① (생략)</p> <p>② (생략)</p> <p>③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u>하여야 한다.</u></p> <p>④ (생략)</p> <p>⑤ (생략)</p>	<p>제10조(분뇨수집 · 운반 등의 대행)</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할 수 있다.</u></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p>제11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p> <p>① (생략)</p> <p>1. (생략)</p> <p>2. (생략)</p> <p>3.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경우에는 <u>청소된 오니의 양(오수포함)과 재투입된 종오니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u></p>	<p>제11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p> <p>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 ----- <u>청소된 오니의 양(오수포함)에 따라 부과한다.</u></p>			



현행	개정 (안)
	<p>있으며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부과 취소후 담당공무원의 의견첨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관할법원에 통보한다.</p> <p>⑦ 구청장은 납부기간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의 독촉장을 체납 확인 후 7일이 내에 발행하여야 한다.</p> <p>⑧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p> <p>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수납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p>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1996. 2. 8.

시민보사위원회

#### 1. 審査經過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5년 12월 12일 구청장
- 나. 회부일자 : 1995년 12월 14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1996년 2월 8일 제40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상정의결

####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시민국장 김종박)

##### 가. 제안이유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95. 4. 1) 개정됨에 따라 구조례중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과태료 징수절차 등을 보완하여 자치구 업무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

## 나. 주요골자

-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
-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및 양식 등을 보완하여 과태료 처분의 효율성을 기함.
- '96. 7. 1일부터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
- 분뇨관련 영업 대행 계약기준 일부 변경

## 3.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전문위원 허영훈)

본 조례안은 기존의 조례중 일부조항의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여 자치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며 내용의 통일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개정의 동기는 '95. 4. 1일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내용별로 살펴볼 것 같으면 제출된 조례안 제5조제1항과 제10조제3항은 강제조항을 의무조항으로 완화한 것으로 보아지며 제8조제2항과 제11조제1항3호의 내용은 신고시 첨부사항을 추가한 것과 청소된 분뇨수거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현 조례에 재투입된 종오니양을 삭제하므로 소유자가 종전엔 수거료 때문에 혼돈할 수 있었던 것을 배제하므로 행정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삭제한 것이며 제16조제2항은 허가받은 정화조 청소업자가 특별한 사유, 즉 법 제36조와 제37조의 내용에 위배되지 않으면 허가취소에 해당되지 않고 계속하여 정화조 청소업 등록이 존속하는 것으로 만들어졌으므로 불합리한 것으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18조는 과태료 부과징수의 내용으로서 법 제58조제2항을 적용하였으나 내용이 불합리하여 법 제58조제3항에 의거하여 개정한 것이며 동조 제5항에서부터 제9항의 신설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서식을 별표로 정한 것으로 개정하려는 본 조례안은 적법하다고 생각되므로 원안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 4. 審査結果 : 原案可決